

1. 개정이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20086호, 2024. 1. 23. 공포, 2024. 7. 24. 시행)으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관련 제도가 법제화되고 영업정지를 갈음할 수 있는 과징금에 관한 내용 등이 추가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관련 제도가 법제화됨에 따라 용어의 정의, 수집 신청·허가·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센터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안 제1조의2, 제28조의2 부터 제28조의11)
- 나.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 마련(안 제3조의5, 제3조의6)
- 다. 목재제품명인 및 지역 간벌재 인증 관련 조항 삭제(현행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삭제)
- 라. 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 표시, 측정 등 제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안 제9조)
- 마.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책 확장 등에 따라 관련 특수법인인 목재문화진흥회의 사업 범위 변경(안 제10조)
- 바.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의 확인 등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안 제14조의2)
- 사. 영업정지 처분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과징금으로

같음하여 부과할 수 있게 됨으로서 이에 대한 과징금의 납부통지,
분할 납부 등에 관한 기준 마련(안 제23조의2, 제23조의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정의)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목재수확, 수종갱신을 통해 나온 산물 중 원목생산에 이용되지 않는 부산물
2. 산지개발 과정을 통해 나온 산물 중 원목생산에 이용되지 않는 부산물
3. 숲가꾸기를 통해 나온 산물
4. 산림병해충 피해목 제거 등 방제 과정에서 나온 산물
5.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숲·생활숲·가로수의 조성·관리 과정에서 나온 산물
6. 산불·풍해·수해·설해 등으로 인한 피해목으로 원목생산에 이용되지 않는 산물

7. 기타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산물 또는 부산물 제2조 중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을 “법 제7조제2항”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자체검사공장”을 “자체검사사업장”으로 한다.

제3조의5의 제목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의 교부 등)”을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의 발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의5제1항”을 “법 제10조의5제3항”으로, “교부받으려”를 “발급받으려”로, “교부신청서”를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 발급 신청서”로, “첨부하여”를 “첨부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목재문화진흥회(이하 “목재문화진흥회”라 한다)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주민등록초본(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조의5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부받은”을 “발급받은”으로, “자격증이 헐어”를 “헐어”로, “자격증을 재교부받으려”를 “재발급받으려”로, “재교부신청서”를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교부 또는 재교부하고”를

“발급 또는 재발급하고”로, “교부대장을 작성·관리”를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 발급대장을 작성·관리(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민등록초본(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탄소저장량 표시·측정을 위한 신청절차, 측정방법, 증명서류 발급, 사후관리, 대행기관의 평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제1호 중 “목재문화”를 “목재문화 및 목재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교육프로그램”을 “교육·문화프로그램”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목재이용 정보화 시스템의 운영

4.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 운영·관리 및 자격증 발급

5. 목재교육전문가 운영기관의 사후관리
6. 목재체험교실 및 공모전 등 국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7. 그 밖에 목재문화진흥회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제2항 중 “시·도”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영 제15조제1항제2호”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로, “첨부하여 한국임업진흥원”을 “첨부하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한국임업진흥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각각 제14조의3 및 제14조의4로 하고,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의 확인) ① 영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국산목재·국산목재제품 확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8호의2서식과 같다.

② 영 제18조의2제4항에 따른 국산목재·국산목재제품 증명서류(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류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8의3서식과 같다.

③ 영 제18조의2제5항에 따른 국산목재·국산목재제품 확인 결과 이의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이의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8호의4서식과 같다.

제14조의3(중전의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8호의2서식”을 “별지 제18호의5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18호의3서식”을 “별지 제18호의6서식”으로 한다.

제14조의4(중전의 제14조의3)제5항 중 “별지 제18호의4서식”을 “별지 제18호의7서식”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8호의5서식”을 “별지 제18호의8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18호의6서식”을 “별지 제18호의9서식”으로, “별지 제18호의7서식”을 “별지 제18호의10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8호의8서식”을 “별지 제18호의11서식”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자체검사공장의 지정절차)”를 “(자체검사사업장의 지정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자체검사공장”을 각각 “자체검사사업장”으로 한다.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① 영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목재생산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35호의3서식에 따라 과징금 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23조의3(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영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통지를 받은 자는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

거나 분할 납부를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의4서식에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하는 경우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하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하여야 한다”를 “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1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다.

1. 생산시설 설치사업 : 임산물 또는 임산물이 혼합된 원료를 사용하여 목재펠릿·목재칩·목재브리켓·장작·성형탄(成型炭)·숯 등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의 설치사업
2. 연소기 보급사업 :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이용하는 보일러·열

풍기·난로 등 연소기의 보급사업

3. 관련 기술 개발사업 :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 관련 기술의 개발사업
제28조의3(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의 신청·허가 등) ① 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허가 및 법 제36조의3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채 목적별 사업계획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입목별채 허가·신고 수리증, 산지전용허가서, 산림병해충 방제 계획서, 숲가꾸기 사업계획서, 산불피해 조사서,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서 등)
2. 별지 제45호서식의 별채예정수량조사서
3.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신청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36조의3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 각 호의 제출 서류를 확인하여 별채목적, 별채예정수량,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예정수량이 적정한 것을 말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신고수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 신고수리)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36조의3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

항”이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실제 수집된 수량이 수집 예정수량 대비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것을 말한다.

⑤ 법 제36조의3제8항에 따른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신고수리)를 받은 자는 수집 기간 내 수집을 원칙으로 할 것
2. 산림 내 장비 투입 시 산림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
3. 조림사업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벌채 허가기간 내에 수집을 완료할 것

제28조의4(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증명신청 등) 법 제36조의4제1항에 따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수집 기간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1.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공급계약서(해당할 경우)
2. 목재생산업 등록증 사본(해당할 경우)
3. 세금(전자)계산서. 다만 세금(전자)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없을 경우 거래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세금(전자)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근거 서류
4. 계측증명서
5. 별지 제48호서식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확인서

제28조의5(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36조의4제1항에 따라 증명서 발급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8조의4 각 호의 제출 서류가 적정할 경우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증명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사용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계측기 오류로 계측량이 변경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신청사항을 확인하여 재발급의 적정성이 인정되면 증명서를 재발급해야 하며, 당초 발급된 증명서는 회수·폐기해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 발급 내역을 분기별로 익월 10일까지 산림청장과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제28조의6(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증명서 발급 취소 등) 법 제36조의4제5항에 따른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의 발급 취소 및 영업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8조의7(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공급확인서 발급 신청 등) ① 미이

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최종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공급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센터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정보체계를 통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유통 이력 등을 확인하고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2호서식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공급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28조의8(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의 사업) 법 제36조의5제2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품질시험, 검사·제조 및 수입에 대한 지원
2.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사용하는 연소기의 기술 개발, 성능 검사 및 보급 지원
3.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 지원
4.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유통 이력 확인 및 확인서 발급
5.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현장 및 제조시설 점검 지원
6.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의9(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36조의5제1항에 따른 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관련 지원사업을 주된 업무로 할 것

2. 제1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이 있을 것

② 센터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전담인력의 보유 현황 및 배치계획서
3. 법 제36조의5제2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추진계획서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으면 센터로 지정하고 별지 제54호서식의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28조의10(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의 사업계획서 제출 등)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년도 사업실적보고서
2.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제28조의11(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의 지정취소 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36조의6제1항에 따라 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하려는 경우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법 제36조의6제2항에 따른 센터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지 제2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부터 별지 제5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0호서식 나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로 한다.

별지 제35호의2서식 부터 별지 제35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중 “자체검사공장”을 각각 “자체검사사업장”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의 제목 “자체검사공장 지정 신청서”를 “자체검사사업장 지정 신청서”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중 “자체검사공장”을 “자체검사사업장”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의2서식 부터 별지 제18호의8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18호의5서식 부터 별지 제18호의8서식 까지, 별지 제18호의9서식, 별지 제18호의10서식 및 별지 제18호의11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8호의2서식, 별지 제18호의3서식 및 별지 제18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호의5서식의 제목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 교부대장”을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 발급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5서식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교부일”

을 “발급일”로 하며, 같은 서식 중 “재교부”를 “재발급”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 발급 취소 및 영업정지 세부기준(제28조의6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 2호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영업정지처분만 해당한다)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공중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내용	관련법규	처분기준		
		1차 위반시	2차 위반시	3차 위반이상
거짓으로 발급 받은 경우	법 제36조의4 제3항	발급취소 · 영업정지 3개월	발급취소 · 영업정지 6개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 받은 경우	법 제36조의4 제3항	발급취소	발급취소 · 영업정지 3개월	발급취소 · 영업정지 6개월

[별표 5]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제28조의11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2. 개별기준

위반내용	관련법규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위반 이상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36조의6 제1항제1호	지정취소		
나. 법 제36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36조의6 제1항제2호	시정명령 2개월	지정취소	
다. 법 제36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된 경우	법 제36조의6 제1항제3호	시정명령 2개월	지정취소	
라. 법 제36조의5제4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36조의6 제1항제4호	시정명령 2개월	시정명령 2개월	지정취소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4서식]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 []발급 []재발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시	처리기간 30일(발급)/10일(재발급)
신 청 인	성 명	(한글) (한자)	사진 (3.5×4.5cm)
	생년월일	성 별	
	주 소		
	연 락 처	전자메일	
	재발급 신청 사유	※ 재발급 신청 시에만 작성합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5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5에 따라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의 발급·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성명

목재문화진흥회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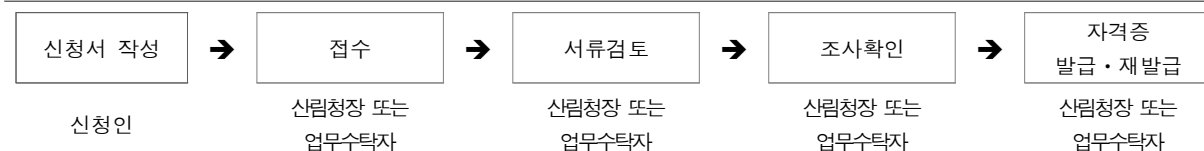
신청인 제출서류	1. 신규 발급의 경우 가. 사진(3.5cm×4.5cm 여권용) 2장 2. 재발급의 경우 가.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잃어버린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나. 사진(3.5cm×4.5cm 여권용) 2장	수수료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제3조의5제 5 항에 따른 금액
담당직원 확인사항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직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합니다)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	-----	----------

신청인	법인명(상호)	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신청내용	국산목재	소유구분 [☐ 국유림 [☐ 공유림 [☐ 사유림	수종(樹種)		
		수확량(㎡)		수확일자	년 월 일
		법인명(상호)		목재생산업 등록번호	
		수확지역(소재지)			
	국산목재 제품	제품종류 [☐ 제재목 [☐ 방부목재 [☐ 난연목재 [☐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 집성재 [☐ 합판 [☐ 파티클보드 [☐ 섬유판 [☐ 배향성 스트랜드 보드 [☐ 목질바닥재 [☐ 목재펠릿 [☐ 목재칩 [☐ 목재브리켓 [☐ 숯(성형숯 포함)			
		제품명(상품명)		생산수량(㎡)	
		법인명(상호)		생산일자	
		목재생산업 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소재지)			
		인증정보 [☐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 한국산업표준 [☐ 목재제품 신기술 [☐ 한국산림인증(FM) [☐ 한국산림인증(CoC) [☐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			
		제품명(상품명)		구매수량(㎡)	
		법인명(상호명)		구매일자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한국임업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	1. 국산목재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 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수리 증빙자료 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국유임산물 매매 증빙자료 2. 국산목재 제품 가. 국산목재 구입·이용 증빙자료 나.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 결과 증빙자료 다.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목재제품 인증 증빙자료	수수료 없음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illegible]

국산목재 · 국산목재제품 확인서

발급번호 제 호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년

1. 목재수확 정보

수종		수확량(㎥)	
법인명(상호명)		수확일자	
수확지역(소재지)		목재생산업 등록번호	

2. 목재제품 정보

제품명(상품명)		생산수량(㎥)	
법인명(상호명)		생산일자	
주소(소재지)		목재생산업 등록번호	

3. 목재구매 정보

제품명(상품명)		구매수량(㎥)	
법인명(상호명)		구매일자	
주소(소재지)			

4. 목재인증 정보

규격품질검사	한국산업표준(KS)	목재제품 신기술(NET)
산림경영인증(FM)	산림경영인증(CoC)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위의 목재 또는 목재제품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임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산 림 청 장

직인

국산목재·국산목재제품 확인 결과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법인명(상호)		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신청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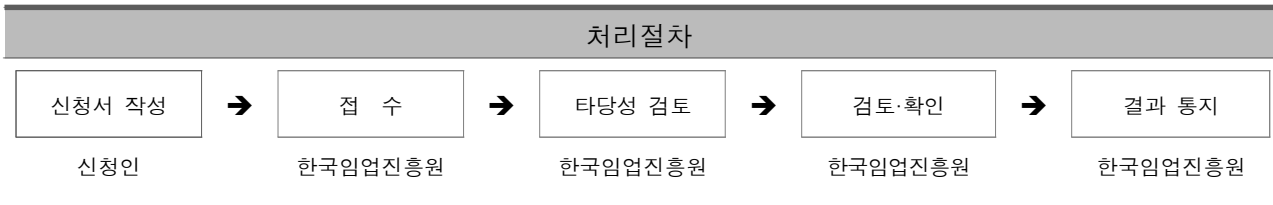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산목재(제품) 확인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임업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과징금납부통지서 등

과징금납부통지서

(수납기관 보관용)

발 행 번 호		
납 부 자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주 소	
위 반 일 자		
위 반 행 위		
납 부 금 액		
납 부 기 한		
수 납 기 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하오니 기한까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수납인		

과징금영수필통지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보관용)

발 행 번 호		
납 부 자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주 소	
위 반 일 자		
위 반 행 위		
납 부 금 액		
납 부 기 한		
수 납 기 관		
위와 같이 납입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직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수납인		

과징금납부영수증

(납부자 보관용)

발 행 번 호		
납 부 자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주 소	
위 반 일 자		
위 반 행 위		
납 부 금 액		
납 부 기 한		
수 납 기 관		
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직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수납인		

과징금 처분대장

[illegible]210mm×297mm[백상지 80g/ m²]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신청서
[]분할 납부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10 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소(법인명)		
	(전화번호:)		
과징금 부과명세	납부통지서 발행번호		
	과징금 부과금액		
	납부기한		

신청사유

신청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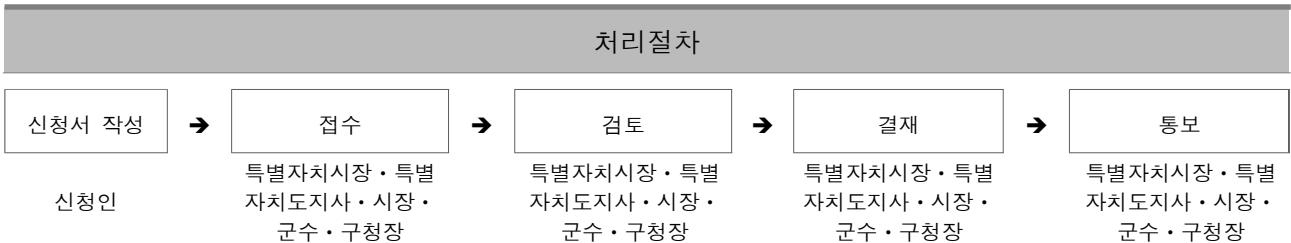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에 따라 과징금 납부
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 허가신청서

[] 변경허가 신청서

[] 변경신고 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시	처리기간
			허가·변경허가 7일 변경신고 5일
신청인	성 명 (업 체 명)	전 화 번 호	
	주 소		
벌채 허가 (신고) · 매각 (산림사업) 사항	자 치 단 체 / 국 유 림 관 리 소		
	허가(신고) 또는 매각(산림사업) 번 호	허가(신고) 또는 매각(산림사업) 일 자	
	수 허 가 자 또는 매 수 자		
	임 산 물 소 재 지		
	벌 채 목 적	[] 수확 [] 수종갱신 [] 숲가꾸기 [] 산지개발 [] 산림병해충 방제 [] 도시숲·생활숲·가로수 [] 산불 피해목 [] 풍해·수해·실해 피해목	
	작 업 종	수 종	
	벌 채 면 적 (m ²)	본 수 (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미이용 산림바이오 매스	신청(신고) 내용	수집 면적 (㎡)	수집 예정수량			
			재 적(㎡)	중 량(톤)		
				합 계	침엽수	활엽수
	수 집 기 간					
	별 도 수 집 또 는 변 경 사유					
	변 경 내 용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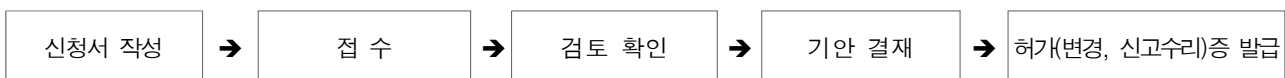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지방산림청장

첨부서류	1. 입목벌채 허가(신고증), 산림병해충 방제계획서, 도시숲 등(도시숲·생활숲·가로수) 사업계획서, 산지전용허가서 등 허가(매각)서류 2.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수집 신청시) 3.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신청시)	수수료 없 음
------	--	------------

유의사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제36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집한 자는 법제45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처리절차



신청인

처 리 기 관(시 · 군 · 구, 지방산림청)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벌채목적	수확	숲가꾸기		수종갱신		피해목 벌채		기타 벌채	

벌채 대상지 일반현황	소재지	지목	면적 (ha)	임령 (00/ 00~00)	평균 가슴 높이 지름 (cm)	평균 수고 (m)	본수(본)		재적(m³)	
							ha 당	전체	ha 당	전체

벌채예정 수량	벌채종	수종	벌채 면적 (m²)	벌채량		수집량		잔존 본수(본)		잔존 재적(m³)	
				본수 (본)	재적 (m³)	면적 (ha)	재적 (m³)	ha 당	전체	ha 당	전체

미이용 산림바이오 매스 예정수량	수종	수집면적 (m²)	수집량	
			면적(m²)	재적(m³, 톤)
				m³ (톤)

년 월 일

작성자 : 산림경영기술자 (자격번호 :)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① 작성자 중 산림경영기술자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 기술초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를 말한다. (다만, 벌채면적이 660㎡ 이하인 경우는 산림소유자가 직접 작성할 수 있다.)
- ② 조사는 표준지조사로 하며, 조사비율은 벌채대상 면적의 2% 이상으로 한다. 다만 숲가꾸기 벌채는 벌채대상 면적의 1% 이상으로 한다.
- ③ 표준지는 사업대상지의 산록, 산복, 산정부에 고르게 배치하여야 하며, 필지별 최소 1개소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지를 1개소만 배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필지의 평균이 되는 지역에 배치하여야 한다.
- ④ 표준지 크기는 개소당 최소 100㎡(사각형 10m×10m, 10m×20m, 20m×20m 또는 반지름 5.7m, 8.0m, 11.3m 원형 표준지 등)로 한다.
- ⑤ 표준지 조사방법
 - 가슴높이 지름 측정은 표준지 내에 6cm 이상 교목을 2cm 괄약으로 측정한다.
 - 수고측정은 경급별 · 수종별 각각 3본 이상을 m 단위로 측정한다.
 - 표준지 경계표시는 흰색페인트(락카 등) 또는 임업용마킹테이프를 표시한다.
 - 존치목은 황색페인트(락카 등) 또는 임업용마킹테이프를 벌목자가 확인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허가증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 신고수리증

성명 (업체명)				전화번호		
주소						
임산물 소재지						
벌채면적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면적		㎡	
허가(신고) 내용	벌채목적	작업종	용도	허가수량		비고
				수종	수량 (㎡,본,톤)	
수집기간	20 . . . ~ 20 . .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3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을 허가(신고수리)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산림청장

직인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 발급 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시	처리기간 7일
------	------	------	---------

신청자	성명 (업체명) 주 소	전화번호
-----	-----------------	------

별채 허가 (신고) / 매각· 산림사업 정보	자치단체 / 국유림관리소			
	허가(신고) 또는 매각·산림사업 번호	허가(신고) 또는 매 각·산림사업 일자		
	수허가자 또는 매수자			
	임산물 소재지			
	별채 목적	[] 수확 [] 수종갱신 [] 산지개발 [] 숲가꾸기 [] 산림병해충 방제 [] 도시숲·생활숲·가로수 [] 산불 피해목 [] 풍해·수해·설해 피해목		
	작업종	수 종		
	수집면적 (㎡)	본 수 (본)		
	생산예정량	원 목(㎡)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톤)		

미이용산림 바이오매스 수집·공급 정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승인번호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승인일자		
	수집기간	20 . . . ~ 20 . . .		
	수집량	재적(㎡)	중량(톤)	
			합계	침엽수 활엽수
	공급처	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목재펠릿·목재칩 생산가능량(톤)	목재펠릿	목재칩
----------------------	------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4에 따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산림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공급계약서 1부. 2. 목재생산업등록증 사본(산주 직접 수집 시 제외) 1부. 3. 세금(전자)계산서[세금(전자)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없을 경우, 거래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세금(전자)계산서 발급 받을 수 없는 근거 서류], 4. 계측증명서 각 1부. 5. 수집확인서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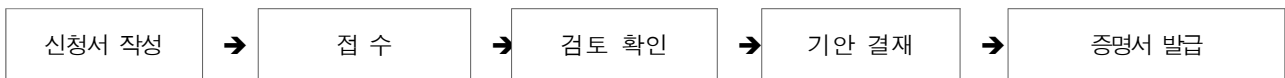
작성 방법

- “생산예정량”은 수집자가 원목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동시 수집하는 경우에는 벌채 허가(신고) 시 신청한 원목 생산 예정수량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증의 수집예정수량을 적습니다. 그리고 수집자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만 수집하는 경우(별도 수집 포함)에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증의 수집 예정수량만 적습니다.

유의 사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제36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법제36조의4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증명서를 유통하는 자는 법제45조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처리 절차



신청인

처리 기관(시·군·구, 지방산림청)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확인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작성자	성명(업체명)		전화번호	
	주소			
미이용 산림바이오 매스 수집 정보	수집량	재적(㎡)		중량(톤)
	용도	목재펠릿(톤)		목재칩(톤)
벌채허가 (신고)정보	성명(업체명)		전화번호	
	벌채허가(매각) 번호·일자			
	임산물소재지			
	벌채목적	[] 수확 [] 수종갱신 [] 산지개발 [] 숲가꾸기 [] 산림병해충 방제 [] 도시숲·생활숲·가로수 [] 산불 피해목 [] 풍해·수해·설해 피해목		
확인·점검 결과	수집면적	허가(신고)면적(㎡)	실제 수집면적(㎡)	수집 비율(%)
	수집기간	20 . . . ~ 20 . . .		
	반출여부	[] 반출완료 [] 일부반출 [] 반출		
확인자 의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4에 따라 위와 같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확인·점검 내역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산림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필지별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반출 전·후 드론사진 또는 전경사진 각 1부. 2. 기술사사무소(농림)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자(농림) 등록증 사본(대행할 경우) 1부. 3. 확인자 자격증사본(대행할 경우)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시		처리기간 7일	
신청자	성명(업체명)			전화번호			
	주소						
증명서 발급내용	증명서 발급 번호 및 일자						
	발급대상자 (목재생산업 등록번호 :)						
	임산물 소재지						
	수집기간						
	벌채목적	수집면적	증명수량(톤)			비고	
			수량(톤)	인정량			
				목재펠릿	목재칩		
		m²					
신청내용	재발급 사유(별첨 가능)						
	재발급 증명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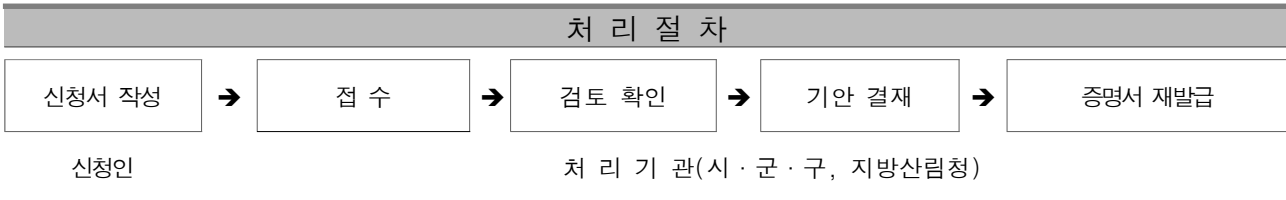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4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산림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기존에 발급받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공급확인서 발급 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업 체 명		부서명
	담 당 자	성명 :	
		e-mail :	
		연락처 :	
신청내용	대상품목		
	공급업체		
	공급대상업체		
	공급확인 신청수량		
	공급기간		

※ 귀 업체에서 이용하신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가 여러 유통단계를 거칠 경우, 유통단계별 이력 확인을 위해 아래 사항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단계	발급번호		유통단계별 구매계약서 첨부 확인 (O, X)	바이오매스 이동 시 계측서류 (O, X)
	최초 공급처			
	1차 공급처			
	2차 공급처			
	3차 공급처			
	기타 유통단계			

※ 필요 시 증명서별 서식 추가하여 기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4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7제1항에 따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공급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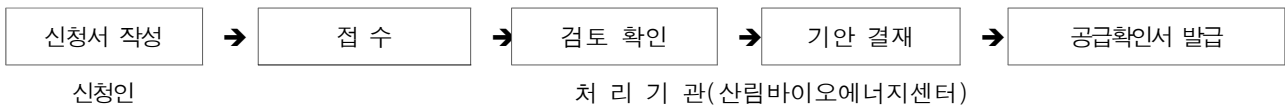
첨부서류	1.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유통단계별 공급계약서 1부. 2. 발전사 입고 시 계측확인서(공차증량 및 적재차량증량 표시) 1부. 3.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 각 1부. 4.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 확인 요청내역서(별지 제52호 서식) 1부. 5.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결과 통지서 1부.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성 방법

- ① “대상품목”란에는 목재칩 또는 목재펠릿을 적습니다.
- ② “공급업체”란에는 업체명과 목재생산업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③ “공급대상업체”란에는 발전사 업체명을 적습니다.
- ④ “공급확인 신청수량”란에는 최종 입고 확인수량을 적습니다.
- ⑤ “1차 공급처”란은 중간 유통 단계가 있을 시 작성합니다.
- ⑥ “2차 공급처”란과 “3차 공급처”란은 중간 유통단계가 더 있을 경우 작성하고 없을 경우 “없음”으로 적습니다.
- ⑦ “기타 유통단계”란은 추가 유통단계가 있을 경우 적습니다.

처리 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20○○ - ○○호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공급 확인서

1. 대상품목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목재펠릿 또는 목재칩)
2. 공급업체 : (목재생산업등록번호 :)
3. 공급대상업체 :
4. 공급 확인수량 : 목재펠릿 ○○톤 또는 목재칩 ○○톤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 수량 : ○○톤
5. 공급기간 : 20 . . . ~ 20 . .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의7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목재펠릿 또는 목재칩)가 공급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센터장

직인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 지정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기관·단체 설립일
	소재지	전화번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5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9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 지정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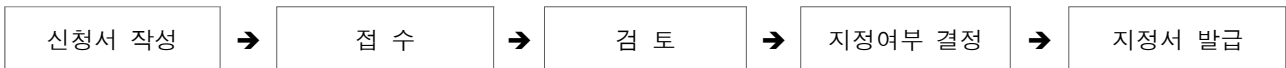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전담인력의 보유 현황 및 배치계획서 3. 사업계획서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기관 또는 단체

처리기관 산림청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 호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 지정서

1. 기관·단체명:

2. 대표자 성명:

3. 소재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5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8제3항에 따라 위 기관 또는 단체를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산 림 청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조의2(정의) 「목재의 지속가</u> <u>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u> <u>“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u> <u>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u> <u>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u> <u>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u> <u>다.</u> <u>1. 목재수확, 수종갱신을 통해</u> <u>나온 산물 중 원목생산에 이</u> <u>용되지 않는 부산물</u> <u>2. 산지개발 과정을 통해 나온</u> <u>산물 중 원목생산에 이용되지</u> <u>않는 부산물</u> <u>3. 숲가꾸기를 통해 나온 산물</u> <u>4. 산림병해충 피해목 제거 등</u> <u>방제 과정에서 나온 산물</u> <u>5.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u> <u>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u> <u>도시숲·생활숲·가로수의 조</u> <u>성·관리 과정에서 나온 산물</u> <u>6. 산불·풍해·수해·설해 등</u> <u>으로 인한 피해목으로 원목생</u> <u>산에 이용되지 않는 산물</u> <u>7. 기타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u>		

	<u>인정하여 고시한 산물 또는 부산물</u>
제2조(지역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제출방법)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역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지역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제출방법) ----- ----- ----- ----- 법 제7조제2항----- ----- ----- ----- ----- 제출해야 한다.
제3조(목재이용위원회의 업무) 법 제9조제2항제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조(목재이용위원회의 업무) -- ----- ----- ----- --.
1. 다음 각 목의 기준의 심사	1. -----
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u>인증·인정기준</u>	<u><삭 제></u>
나.·다. (생략)	나.·다. (현행과 같음)
라. 법 제20조제2항제4호에 따른 <u>자체검사공장의 지정 기준</u>	라. ----- ---- <u>자체검사사업장</u> ---- ----
마. (생략)	마. (현행과 같음)
2. ~ 5. (생략)	2. ~ 5. (현행과 같음)

제3조의5(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의 교부 등) ① 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을 교부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의4서식의 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목재교육 전문과정 이수증명서

<신 설>

2.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목재문화진흥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

제3조의5(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의 발급 등) ① 법 제10조의5제3항-----
----- 발급받으려-----
-----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 발급 신청서-----
----- 첨부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목재문화진흥회(이하 “목재문화진흥회”라 한다)에 ---.

<삭 제>

2. 주민등록초본(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3. (현행 제2호와 같음)

<삭 제>

등록표 초본(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한다.)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되거나 자격증의 기재사항에 오류 등이 있어 자격증을 재교부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의4서식의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목재문화진흥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생략)

<신설>

2. (생략)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목재문화진흥회는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을 신청인에게 교부 또는 재교부하고, 별지 제2호의5서식의 교부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③ ----- 발급받은 -----
----- 헐어 -----

----- 재발급받으려-----
-----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

1. (현행과 같음)

2. 주민등록초본(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3. (현행 제2호와 같음)

④ -----

--- 발급 또는 재발급하고---
-----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 발급대장을 작성·

⑤ 법 제10조의5제5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거나 재교부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는 5만원의 범위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인증·인정의 신청절차) ①

삭제

② 삭제

③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재제품명인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목재문화진흥회(이하 “목재문화진흥회”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정을 받으려는 목재제품명인에 관한 요약서 및 설명서(전통 목재제품의 원형 복원 능력, 제작공정·제작기법의 전통성, 관련 경연대회에서의 입상 경력, 보유하고 있는 목공예 기술을 전수받은 경위 등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관리(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삭 제>

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3호 나목에 따른 평가항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제1호의 요약서 및 설명서에 기재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가. 관련 경연대회에서의 입상 경력

나. 보유하고 있는 목공예 기술을 전수받은 경위

다. 목공예 부문에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또는 제32조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된 사실이나 목공예 부문에서 활동한 경력

3. 신청인의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2.5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로 한다. 이하 같다) 2장

④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한국임업진흥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재제품에 사용된 목재의 양 중 해당 목재제품의 생산장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지역 또는 연결된 시·도 지역 내에서 생산된 간벌재를 사용한 비율 등에 관한 설명서

2. 제1호의 간벌재 사용 비율을 증명하는 서류

제5조(인증서·인정서의 발급 절차) 산림청장은 제4조에 따른 인증·인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인증·인정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7호서식의 인정서 또는 별

<삭 제>

지 제8호서식의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내용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인증서·인정서의 재발급)

<삭 제>

제5조에 따라 발급받은 인증서 또는 인정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를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서 또는 인정서가 헐어 못 쓰게 되거나 인증서 또는 인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가. 인증서 또는 인정서 원본 (인증서 또는 인정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나. 신청인의 사진 2장(목재제품명인 인정서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인증서 또는 인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가. 인증서 또는 인정서 원본

나.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

하는 서류

다. 신청인의 사진 2장(목재
제품명인 인정서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7조(인증·인정의 표시방법)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인증·인
정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재제품명인의 인정: 해당
목재제품명인이 제작한 목재
제품이나 그 제품의 포장·용
기 및 홍보물 등에 산림청장
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마크
를 인쇄하거나 스티커(붙임딱
지)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
로 표시

2.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
증: 해당 목재제품이나 그 제
품의 포장·용기 및 홍보물
등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
하는 인증마크를 인쇄하거나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
으로 표시

제9조(탄소저장량의 표시방법)
(생략)
<신설>

<삭제>

제9조(탄소저장량의 표시방법)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탄소

제10조(목재문화진흥회의 사업)
 법 제16조제2항제5호에서 “농
 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
 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내외 목재문화 관련 정보
 의 수집
2. 목재문화 정보화 사이트의
운영
3. 목재 가공 관련 교육프로그
램의 개발·보급
4. 목재제품명인 인정의 신청
접수 및 검토

<신 설>

<신 설>

<신 설>

저장량 표시·측정을 위한 신청
절차, 측정방법, 증명서류 발급,
사후관리, 대행기관의 평가 등
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목재문화진흥회의 사업) -

 -----.

1. ----- 목재문화 및 목재이용

2. 목재이용 정보화 시스템의
운영
3. ----- 교육·문화
프로그램-----
4.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 운
영·관리 및 자격증 발급
5. 목재교육전문가 운영기관의
사후관리
6. 목재체험교실 및 공모전 등
국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7. 그 밖에 목재문화진흥회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
하는 사업

제11조(목재문화진흥회의 조직·운영) ① (생략)

② 목재문화진흥회에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시·도에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

③ (생략)

제12조(안전성평가의 절차) ① 영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성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평가를 받으려는 목재제품에 관한 설명서(규격, 건조 상태, 강도, 방출되는 유해물질의 종류 등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를 첨부하여 한국임업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신설>

제11조(목재문화진흥회의 조직·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안전성평가의 절차) 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 첨
부하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한국임업진흥원”이라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의 확인) ① 영 제18조의 2제3항에 따른 국산목재·국산목재제품 확인신청서(전자문서

제14조의2(수입신고 등)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의2 서식의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2. (생략)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인에게 별지 제18호의3 서식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④ (생략)

제14조의3(수입검사 등) ① ~ ④

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8호의2서식과 같다.

② 영 제18조의2제4항에 따른 국산목재·국산목제품 증명서류(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류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8호의3서식과 같다.

③ 영 제18조의2제5항에 따른 국산목재·국산목제품 확인결과 이의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이의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8호의4서식과 같다.

제14조의3(수입신고 등) ① -----

----- 별지 제18호의5 서식-----

1. 2. (현행과 같음)

② -----
----- 별지 제18호의6서식-----
-----.

③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의4(수입검사 등) ① ~ ④

(생략)

⑤ 신고인은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의4서식에 따른 수입검사 결과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생략)

제15조(목재등급평가사의 등록)

①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목재등급평가사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목재등급평가사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3. (생략)

②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람이 영 별표 1의5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6서식의 목재등급평가사 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8호의7서식의 목재등급평가사 등록대장을 작성·관

(현행과 같음)

⑤ -----

---- 별지 제18호의7서식 ----

-----.

⑥ (현행과 같음)

제15조(목재등급평가사의 등록)

① -----

---- 별지 제18호의8서식 ----

-----.

1. ~ 3. (현행과 같음)

② -----

별지 제18호의9서식 -----

별지 제18호의10서식 -----

리해야 한다.

③ 목재등급평가사는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훼손되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8 서식의 목재등급평가사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2. (생략)

제16조(자체검사공장의 지정절차)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자체검사공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임업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②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자체검사공장 지정서는 별지 제23호 서식과 같다.

<신 설>

-----.

③ -----

----- 별지 제18호의11 서식-----

1. 2. (현행과 같음)

제16조(자체검사사업장의 지정절차)

① ----- 자체검사사업장-----

-----.

1. 2. (현행과 같음)

② ----- 자체검사사업장 -----
-----.

제23조의2(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① 영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목재생산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 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35호의3서식에 따라 과징금 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23조의3(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영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 통지를 받은 자는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의4서식에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하는 경우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하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제27조(목구조기술자 자격증의 발급절차) ①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이 그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및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는 해당자에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생략)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교육과정 이수 증명서 또는 대학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

3. 4. (생략)

② ③ (생략)

<신설>

제27조(목구조기술자 자격증의 발급절차) ① -----

----- 제출해야 -----.

해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

3. 4. (현행과 같음)

② ③ (현행과 같음)

제28조의2(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신 설>

지의 이용·보급 촉진)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다.

1. 생산시설 설치사업 : 임산물 또는 임산물이 혼합된 원료를 사용하여 목재펠릿·목재칩·목재브리켓·장작·성형탄(成型炭)·숯 등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의 설치사업

2. 연소기 보급사업 :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이용하는 보일러·열풍기·난로 등 연소기의 보급사업

3. 관련 기술 개발사업 :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 관련 기술의 개발사업

제28조의3(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의 신청·허가 등) ① 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허가 및 법 제36조의3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4호

서식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 변경허가, 변경신
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
해야 한다.

1. 벌채 목적별 사업계획을 증
빙할 수 있는 서류(입목벌채
허가·신고수리증, 산지전용허
가서, 산림병해충 방제 계획
서, 숲가꾸기 사업계획서, 산
불피해 조사서, 국유임산물 매
각계약서 등)

2. 별지 제45호서식의 벌채예정
수량조사서

3.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
경신고 신청인 경우만 해당한
다)

② 법 제36조의3제2항에서 “농
림축산식품부령에서 정하는 사
항”이란 제1항 각 호의 제출 서
류를 확인하여 벌채목적, 벌채
예정수량, 미이용 산림바이오매
스 예정수량이 적정한 것을 말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
산림청장은 미이용 산림바이오
매스 수집 허가(신고수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미
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
가, 신고수리)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36조의3제4항에서 “농
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
요한 사항”이란 미이용 산림바
이오매스의 실제 수집된 수량이
수집 예정수량 대비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것을 말한다.

⑤ 법 제36조의3제8항에 따른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
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신고수리)를 받은 자는
수집 기간 내 수집을 원칙으
로 할 것

2. 산림 내 장비 투입 시 산림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

3. 조림사업 등에 영향을 미치
지 않도록 벌채 허가기간 내

<신 설>

<신 설>

에 수집을 완료할 것

제28조의4(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증명신청 등) 법 제36조의 4제1항에 따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수집 기간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1.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공급 계약서(해당할 경우)
2. 목재생산업 등록증 사본(해당할 경우)
3. 세금(전자)계산서. 다만 세금(전자)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없을 경우 거래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세금(전자)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근거 서류
4. 계측증명서
5. 별지 제48호서식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확인서

제28조의5(미이용 산림바이오매

스의 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36조의4제1항에 따라 증명서 발급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8조의4 각 호의 제출 서류가 적정할 경우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증명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사용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계측기 오류로 계측량이 변
경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신청사항을 확인하여 재발급의 적정성이 인정되면 증명서를 재발급해야 하며, 당초

<신 설>

<신 설>

발급된 증명서는 회수·폐기해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
산림청장은 미이용 산림바이오
매스 증명서 발급 내역을 분기
별로 익월 10일까지 산림청장과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제28조의6(미이용 산림바이오매
스의 증명서 발급 취소 등) 법
제36조의4제5항에 따른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의 발급
취소 및 영업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8조의7(미이용 산림바이오매
스의 공급확인서 발급 신청 등)
①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최
종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51
호서식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
스 공급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센터
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정보
체계를 통해 미이용 산림바이오
매스 유통 이력 등을 확인하고

<신 설>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2호서식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공급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28조의8(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의 사업) 법 제36조의5제2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품질시험, 검사·제조 및 수입에 대한 지원
2.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사용하는 연소기의 기술 개발, 성능 검사 및 보급 지원
3.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 지원
4.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유통이력 확인 및 확인서 발급
5.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현장 및 제조시설 점검 지원
6.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28조의9(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36조의5제1항에 따른 센터로 지

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관련 지원사업을 주된 업무로 할 것

2. 제1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이 있을 것

② 센터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 운영규정

2. 전담인력의 보유 현황 및 배치계획서

3. 법 제36조의5제2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추진계획서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으면 센터로 지정하고 별지 제54호서식의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 지정서를

<u><신 설></u>	<u>발급해야 한다.</u> <u>제28조의10(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의 사업계획서 제출 등)</u> <u>센터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u> <u>1. 전년도 사업실적보고서</u> <u>2.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u>
<u><신 설></u>	<u>제28조의11(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의 지정취소 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36조의6제1항에 따라 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하려는 경우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u> <u>② 법 36조의6제2항에 따른 센터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u>